제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0

제출년월일 : 1999. 5.
제 출 자 : 제주시장

I 제 안 이 유

1964년 6월 30일부터 설립 운영해오고 있는 제주시민회관이 사업소로서 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제주시민회관』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기구·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II 주 요 골 자

가. 제7조 제2항 제6호의 "제주시민회관"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7호 "제주시민회관 관리"를 신설하며 "관광민속관"을 "제주민속관광타운"으로 한다. (안 제7조)

나. 제17조 제7호 제주시민회관의 소관사무란을 삭제한다. (안 제17조)

III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발췌

○ 신·구조문 대비표

제주시 조례 제 호

제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6호의 "제주관광민속관"을 "제주민속관광타운"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6호의 "제주시민회관"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시민회관 관리

제15조 제2항 〔별표1〕 중 제주시민회관란을 삭제한다.

제17조중 제7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문화관광국)①(생략)	제7조(문화관광국)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1~5. (생략)	1~5. (생략)
6. 제주관광민속관,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시립탐라도서관, 제주시민회관 및 제주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지도감독	6 제주민속관광타운,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시립탐라도서관 및 제주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지도감독
7. (신설)	7. 제주시민회관 관리
제17조(소관사무) (생략)	제17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4. 제주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3. 제주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가~라. (생략)	가~라. (현행 제4호와 같음)
5. 제주시우당도서관	4. 제주시우당도서관
가~다. (생략)	가~다. (현행 제5호와 같음)
6. 제주시립탐라도서관	5. 제주시립탐라도서관
가~다. (생략)	가~다. (현행 제6호와 같음)
7. 제주시민회관	(삭 제)
가. 시민회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나. 시민회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8. 제주시수질환경사업소	6. 제주시수질환경사업소
가~마. (생략)	가~마. (현행 제8호와 같음)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table><tr><th>사업소명</th><th>위 치</th></tr><tr><td>제 주 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td><td>제주시 건입동
533</td></tr><tr><td>제 주 시
폐기물환경
사 업 소</td><td>제주시 회천동
294-22</td></tr><tr><td>제 주 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td><td>제주시 오라1동
1163-4</td></tr><tr><td>제 주 시
우당도서관</td><td>제주시 건입동
318</td></tr><tr><td>제주시립
탐라도서관</td><td>제주시 노형동
1479</td></tr><tr><td>제 주
시민회관</td><td>제주시 이도1동
1700-1</td></tr><tr><td>제 주 시
수질환경
사 업 소</td><td>제주시 도두동
849</td></tr></table></td><td>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table><tr><th>사업소명</th><th>위 치</th></tr><tr><td>제 주 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td><td>제주시 건입동
533</td></tr><tr><td>제 주 시
폐기물환경
사 업 소</td><td>제주시 회천동
294-22</td></tr><tr><td>제 주 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td><td>제주시 오라1동
1163-4</td></tr><tr><td>제 주 시
우당도서관</td><td>제주시 건입동
318</td></tr><tr><td>제주시립
탐라도서관</td><td>제주시 노형동
1479</td></tr><tr><td>삭</td><td>제</td></tr><tr><td>제 주 시
수질환경
사 업 소</td><td>제주시 도두동
849</td></tr></table></td></tr>
</table>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사업소의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사업소(법 제10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소 설치의 타당성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03조제1항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내의 자치구가 4급 또는 4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2. 직할시·도 및 그 관할구역내의 시·군·자치구가 5급 또는 5급상당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 제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11. 20

전문개정 제1749호

개정 1999. 3. 18 조례 제177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영"이라한다)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이하"시"라"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등】 ① 시 본청의 실장·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타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시 본 청

제3조 【실·국·과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 기획실, 사회경제국, 문화관광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 【총무과】 ① 부시장 직속으로 총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의식 및 행사
2. 조직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련사항
3. 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4. 물품조달, 출납관리 및 계약체결
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타실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5조 【기획실】 ① 기획실에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및 종합민원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

3. 대의회 업무 및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4. 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주요시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6. 동행정 지도 감독
7. 민방위 업무
8. 시행정의 감사업무
9. 공보행정 업무
10. 행정전산화 및 행정통신관련 업무
11. 민원업무
12. 병역징집, 소집관련 업무
13. 지적관련업무
14. 국·공유재산 및 시유재산의 관리

제6조【사회경제국】 ① 사회경제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산업과 및 환경관리과를 둔다.

② 사회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세민복지, 노인복지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
2. 여성복지행정, 청소년복지 및 아동복지 관련 업무
3. 지역경제 관련 업무
4. 지방세 관련 업무
5. 농·수·축산업등 산업관련 업무
6. 오수관리, 폐기물관리, 청소행정등 환경관리 업무
7. 제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및 제주시폐기물환경사업소 지도 감독

제7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관광경영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위생과 및 녹지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 관광홍보, 대외협력등 관광행정 관련 업무
2. 문화예술 및 체육관련 업무
3. 교통안정, 자동차운행, 주차장등 교통행정 관련 업무
4.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등 위생행정 관련 업무
5. 가로수관리, 공원녹지, 산림관리등 녹지행정 관련 업무
6. 제주관광민속관,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시립탐라도서관, 제주시민회관 및 제주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지도 감독

제8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및 하수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개발제한구역관리등 도시행정 관련 업무
2. 도로·교량관리, 광고물관리, 재난관리사무등 건설행정 관련 업무
3. 국민주택, 건축물허가등 건축행정 관련 업무
4. 상수도 행정관련 업무
5. 하천관리, 하수처리등 하수행정 관련 업무
6. 제주시수질환경사업소 지도 감독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 1 절 보 건 소

제9조 【설치】 ① 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보건소(이하"보건소"라한다)를 둔다.
② 보건소의 위치는 제주시 이도2동 1176-1에 둔다.

제10조 【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 【소관사무】 보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 2 절 농업 기술 센터

제12조 【설치】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제주시 노형동 1423-1에 둔다.

제13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의 지휘·감독한다.

제14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시행
2. 농민후계자, 전업농·육성지도 및 농촌지도자 양성
3. 농업경영개선, 영농기계화 관련 업무

4. 감귤기술, 채소, 원예, 화훼, 특용작물 관리 지도
5. 농업기술개발 관련 업무

제 4 장 사 업 소

제15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6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가. 근로청소년 복지행정 및 교육훈련업무
 나. 불우 근로청소년 선도 및 생활상담
 다. 근로청소년 취미생활지도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라. 근로청소년 직업보도 및 부업알선
2. 제주시폐기물환경사업소
 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나. 폐기물처리시설지역 지류 수질검사 및 관리
 다. 재활용품 집하장관리
 라. 기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9. 3.18
4. 제주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가. 종합경기장 시설의 유지 관리
 나. 종합경기장 시설의 사용 허가
 다. 각종 경기용구 관리
 라. 종합경기장 입장권 발매
5. 제주시우당도서관
 가. 도서의 수서정리 및 열람 장서 관리
 나.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다. 우당도서관 시설의 보호 유지 및 관리

6. 제주시립탐라도서관
 가. 도서의 수서정리 및 열람장서 관리
 나.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다. 탐라도서관 시설의 보호 유지 및 관리

7. 제주시민회관
 가. 시민회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나. 시민회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8. 제주시수질환경사업소
 가.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나. 처리장 시설의 증설, 보수 및 유지관리
 다.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차집관로 유지보수
 라. 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마. 기타 하수종말 처리에 관한 사항

제 5 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동

제18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5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님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를 폐지한다.
1. 제주시보건소조례
2. 제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제1편 총무 제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3. 제주시시민회관조례
4. 제주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5. 제주시우당도서관설치조례
6. 제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
7. 제주시립탐라도서관설치조례
8. 제주시폐기물환경사업소설치조례
9. 제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
10. 제주관광민속관설치조례
11. 제주시동사무소조례
12. 제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제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호중 "바. 농촌지도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하상"으로 한다.

② 제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제5조 별표1중 "제주시농촌지도소"를 "제주시농업기술센터"로 한다.

③ 제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2조 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한다.

부 칙 (1999.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5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제주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제주시 건입동 533
제주시폐기물환경사업소	제주시 회천동 294-22
제주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제주시 오라1동 1163-4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시 건입동 318
제주시립탐라도서관	제주시 노형동 1479
제주시민회관	제주시 이도1동 1700-1
제주시수질환경사업소	제주시 도두동 849

<개정> 1999. 3. 18 조례 제1775호

제1편 총무 제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별 표 2>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8조관련)

동사무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일도1동사무소	제주시 일도1동 1306-7	일도1동 일원
일도2동사무소	제주시 일도2동 161-1	일도2동 일원
이도1동사무소	제주시 이도1동 1700-1	이도1동 일원
이도2동사무소	제주시 이도2동 1176-4	이도2동, 도남동 일원
삼도1동사무소	제주시 삼도1동 528-17	삼도1동 일원 (단, 삼도2동 관현구역 제외)
삼도2동사무소	제주시 삼도1동 108-15	삼도2동 일원 및삼도1동 지역중 55-57, 60-62, 63-2, 64-1~2, 65-1, 69, 72-1, 72-3, 76, 77, 79~82, 84~90, 97~100, 102-2, 103,104, 106, 110~118, 123,140, 142-3, 144, 146,149~153, 155, 158, 159-1~2,160~162, 164, 166,168,.170, 171, 174, 175-1~3, 176, 189, 193, 193-2, 195-1, 196, 198, 199-1~36, 202-1~6, 203, 204-1, 206, 212~217, 219, 220,220-3, 222~224, 228-1~56, 229 230, 231-4~6, 235, 235-2~36, 239-11, 240-1~14, 242-2, 242-14, 243-1~7, 247~249, 250-1, 251-1~33, 256~259-83, 266-1~13, 294-2~24, 300-1~93, 303, 303-6, 593-1~31, 594-1~42, 595-1~11,~596-1~9, 597-1~29, 598-1~25, 599-1~20, 600-1~26, 602-1~8, 603-1~20, 606-1~16, 632-1~16, 789, 789-9, 790-1~4, 800-1~4, 801-1~15, 802, 802-9~26, 803-1~29, 805-1~16, 807 809~811, 811-1~29, 819, 819-1~14820-2~15, 821-1~12, 825, 827-3~12, 828, 828-2, 829-22, 830-1~15, 831~937, 839, 842-1~2, 843, 845, 847-1, 851~853, 855, 857, 858, 903, 905~907, 907-2~13, 911~918, 920-2, 921, 926~929, 931~936, 938, 940~945, 946-2~3, 948, 950, 955-1, 956, 959, 959, 959-5, 959-4, 961, 962, 964~967, 969~978, 981~983, 1227, 1233-1~5, 1234-1~3, 1235-1~8, 1236-1~8, 1237-1~10, 1241-1~19

용담1동사무소	제주시 용담2동 242-6	용담1동 일원
용담2동사무소	제주시 용담2동 358-32	용담2동, 용담3동 일원
건입동 사무소	제주시 건입동 1143	건입동 일원
화북동 사무소	제주시 화북1동 1976-7	화북1동, 화북2동 일원
삼양동 사무소	제주시 삼양2동 2150-4	삼양1동, 삼양2동, 삼양3동, 도련1동, 도련2동 일원
봉개동 사무소	제주시 봉개동 1824-1	봉개동, 회천동, 용강동일원
아라동 사무소	제주시 아라1동 1644-5	아라1동, 아라2동, 월평동, 영평동, 오등동 일원
오라동 사무소	제주시 오라3동 1191	오라1동, 오라2동, 오라3동 일원
연 동 사무소	제주시 연동 302-6	연동 일원
노형동 사무소	제주시 노형동 1408-4	노형동, 해안동 일원
외도동 사무소	제주시 외도2동 351-24	외도1동, 외도2동, 내도동, 도평동 일원
이호동 사무소	제주시 이호1동 455-4	이호1동, 이호2동 일원
도두동 사무소	제주시 도두1동 1987-1	도두1동, 도두2동 일원